##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26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김영배·한정애·권칠승

이용선 • 이재정 • 홍기원

차지호 • 조정식 • 이재강

이기헌 • 유후덕 • 이재명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였음.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계획하던 당시 김용현 국방 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 이 제기된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고 자함(안 제24조 및 제26조).

법률 제 호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전단등 살포 장소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장(살포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경찰청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살포시간, 장소,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내용물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해당 전단등 살포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 ⑤ 관할경찰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또는 제4항에 따른 살포 금지를 통고받은 자가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경우 살포 장소에 출동하여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

합의서(제24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

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② (생 략)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전단등 살포 장소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장(살포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경
	<u>찰청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u>
	서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에게 살포시간, 장소, 방법, 전
	단 등의 수량, 내용물 등을 사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전단등 살포가 국
	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
	단등 살포의 금지를 통고하여
	<u>야 한다.</u>
<u>&lt;신 설&gt;</u>	⑤ 관할경찰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또는 제4항에 따른 살포 금
	지를 통고받은 자가 전단 등

<신 설>

살포를 하려는 경우 살포 장소 에 출동하여 즉시 제지하고 해 산을 명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제 3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제3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 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